

연금보험료 등 소득·세액 공제확인서

소득자	① 성명	② 주민등록번호
	③ 주소	

1. 과세기간별 연금보험료 등 소득·세액 공제 명세

④ 확인 기간	2001.1.1. ~ . . .		
과세연도	공적연금 소득공제액	연금계좌 소득·세액 공제액 (세액공제 대상금액)	소상공인 소득공제액
		()	
		()	
		()	
		()	
		()	
		()	
		()	
		()	
		()	
		()	
		()	
합계액		⑤	

※ 각 과세연도의 연금계좌 소득·세액 공제액란에 표기되는 금액은 2013년 이전분의 경우 소득공제액을, 2014년 이후분의 경우 세액공제액(괄호 안은 세액공제 대상금액)*을 의미합니다.

*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소득세 공제 제도: 2014년 이후 지출분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

※ 합계액(⑤)란에 표기되는 금액은 2013년까지의 소득공제액과 2014년 이후의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합계액입니다.

2. 연금계좌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 명세

⑥ 연금계좌 소득·세액 공제금액 합계 (⑤)	
⑦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된 연금계좌에서 소득·세액 공제받은 금액	
⑧ 연금계좌 소득·세액 공제금액 잔액 (⑥-⑦)	

※ ⑦란과 관련하여 2013.1.1 전에 개시되거나 해지된 연금계좌와 관련된 금액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
위와 같이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201조의10제1항에 따라 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연금보험료 등 소득·세액 공제 확인서를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세무서장

직인